

# 대구평강교회 향존직 선출 및 선거 관리 규정

2024. 11. 03 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평강교회 향존직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선거관리기구

1. 당회는 향존직 선거와 관련된 제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회원(부목사 포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 제3조 선출시기 및 회수

1. 매 3년을 기준으로 향존직 선거를 하고, 필요에 따라 당회에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선출투표는 총 3차 이내로 실시한다.

## 제 2 장 향존직 후보자의 자격 및 선거권

### 제4조 향존직 후보자 자격조건

향존직 후보자는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6장 장로, 제8장 안수집사, 권사 자격조건에 해당된 자라야한다.

1. 장로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2. 안수집사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안수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후 3 : 8-10)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남자라야 한다.
3. 권사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딤후 3 : 1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여자라야 한다.

### 제5조 항존직 후보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존직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받는다.

1. 교회 사무직원 및 기타 교회 업무에 근로자 신분의 유급으로 종사하는 교인

단, 교회직원이 장로로 피택 될 경우 장로 또는 교회직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안수집사, 권사의 경우는 임직 후 항존직을 휴무함으로 교회직원으로 근무 할 수 있다.

2.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 선거권자

1. 선거권자는 교회에 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로 한다.

## 제 3 장 항존직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선정

### 제7조 예비후보자 선정

1.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제8조 후보자 정원에 의거 예비후보자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2) 선거인단의 구성은 시무 및 은퇴 항존직분자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정된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당회에 제안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정된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제2장에서 정한 후보자 자격요건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 부적격자는 명단에서 제외하고 그 명단과 사유를 당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다.

2) 후보자 명부는 선거인단 투표결과의 득표순으로 작성한다.

### 제8조 후보자 정원

1. 장로후보자 정원은 노회에서 허락받은 인원의 2배수 이하로 한다.

2. 안수집사, 권사후보자 정원은 각각 당회에서 정한 증선 인원의 2배수 이하로 한다.

3. 후보자 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서 제안하고 당회 결의로 확정한다.

### 제9조 후보자 선정

당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후보자 명단을 심의하여 재적 2/3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 제 4 장 항존직 후보자 공고

### 제10조 후보자 통지

선거관리위원장은 당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항존직 후보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그 사실을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개최 전에 개인별로 통보(문자, 메일 등 전자적 방법 포함)한다.

### 제11조 후보자 사퇴

제10조에 의거 통보받은 후보자가 사퇴를 희망할 경우 후보자에서 제외하며, 후보 사퇴로 인하여 후보자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도 추가로 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

### 제12조 후보자 기호

최종 후보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득표순(동점시 본교회 등록순)으로 후보자 기호를 부여한다.

### 제13조 후보자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의회용 후보자명부를 제작하기 위해 후보자로부터 후보자의 상반신 명함판 사진, 후보자의 성명과 직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과 나이, 그리고 본교회에서 담당하는 사역 중 최근 주요 경력(3가지 정도) 및 최근 이수한 교육 및 훈련 사항을 제출 받는다.

## 제 5 장 공명선거

### 제14조 부정행위 금지

1. 항존직 선거 일정이 공고된 날부터 투표가 종료되는 날까지 다음의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 1) 후보자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교회 내외에서 권유하는 행위
  - 2) 문서 또는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홍보하는 행위
  - 3) 다른 후보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
  - 4) 기타 금품 수수, 음식물 등의 접대 행위
2.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되, 부정선거운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엄정히 조사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중 경고 조치한다.
3. 부정선거운동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당회에 보고된 경우 당회 결정에 따라 후보자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 제 6 장 향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 제15조 향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공고

1. 향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장소·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 향존직 선거를 위한 투표를 정한 주일 1부 예배 후부터 오후 예배를 마친 뒤 1시간 후에 마감하고, 위원장이 마감을 공포한다.

## 제 7 장 투·개표 및 당선자 확정

### 제16조 투표용지

투표용지의 양식과 종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되, 제2차 투표용지는 제1차 투표 결과에 따른 득표자순으로 작성한다.

### 제17조 개표

1. 개표는 투표가 종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투표함을 일괄 수거한 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개표한다.
2. 개표위원은 당회원이 하고, 교회 직원이 보조한다.

### 제18조 선출

1. 제3장에 의거 확정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의회에서는 총 2회 투표(제1차 투표 및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2. 제1차 투표에서 예정 인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제1차 투표 결과의 득표 순서에 따라, 당선자를 제외한 추가 선출 예정 인원의 2배수 이하로 제2차 후보자를 선정. 공고한다.
3. 투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 당선자로 한다.
4. 당선 득표수는 다음과 같다.
  - 1) 장로는 총 투표수의 2/3이상
  - 2) 안수집사는 총 투표수의 1/2이상
  - 3) 권사는 총 투표수의 1/2이상

### 제19조 투표결과 공고

1.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현황 및 결과, 당선자 명단을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 결의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2. 당선 확정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공고하고 차주 주보에 게재한다. 이 때 당선자의 순

서는 주민등록상의 연령순(많은순)으로 한다.

### 제20조 투표용지 보관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련 일체의 서류를 1년간 보관한다.

### 부칙

제1조 이 규정의 시행일은 당회 결의 후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 한다.

제2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헌법」, 「총회 헌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 이 규정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은 당회원 재적인원 2/3이상의 결의로 한다.

붙임 서식1)

### ( ) 선거 후보자 공고

기 호	1	2	3
사 진			
이 름			
연 령	년 월 일생 (만 세)	년 월 일생 (만 세)	년 월 일생 (만 세)
교 회 봉 사 경 력	1. 2. 3.	1. 2. 3.	1. 2. 3.
비 고			

※ 작성 시 유의 사항

1.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에 기재된 내용으로 작성
2. 연령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함
3. 경력은 후보자 본인이 지정한 대표 경력 3가지(부서와 직책)로 한정(구역장 권찰 포함)